

모의고사 지문분석

이 감 감

부록

2023학년도 시준5 제1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정신과 미적 속성의 실재성에 대한 담론

지문 평가

(가)의 '창발주의자'들은 정신의 환원 불가능성을 주장하면서도 정신의 실재성을 긍정하는 입장이라면, 김재권은 정신의 환원 가능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정신의 실재성을 긍정하는 입장이다. 이 지점을 분명히 읽어 낼 수 있어야만 (나)의 미적 수반론에 대한 진정한 논의를 파악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새겨 볼 가치가 있는 지문이다.

Keyword

(가) 인문 - 현대 철학 - 김재권

창발주의자, 수반, 기저 속성, 창발, 심신 이원론, 김재권, 데카르트적 심신 이원론, 기능적 환원, 물리주의

(나) 예술 - 미학 - 미적 수반론

미적 판단, 미적 속성, 비미적 속성, 미적 수반론, 시블리, 취미 능력, 미적 반실재론자, 레빈슨, 맥락적 속성

(가) 문단 1 실재성에 대한 논의

1) 물리적 세계는 물론, 정신, 도덕적 가치, 미적 속성 등은 대상을 파악하는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재하는가?

맥락 읽기 첫 문단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의식하면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과연 '물리적 세계, 정신, 도덕적 가치, 미적 속성' 등은 실재하는가, 혹은 실재하지 않는가[→ 주체의 마음에서 비롯된 관념일 뿐인가?]

2) 물리적 세계의 실재를 믿는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정신이나 도덕적 가치 등이 물질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관심을 둔다. 정신이 물질과 동일한 것이거나 물질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신 역시 물질로서 실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적어도 '물리적 세계'는 분명 실재하는 것이라고 대부분이 생각한다. 이를 전제로 삼아, 그렇다면 '정신, 도덕적 가치, 미적 속성' 등은 실재하는가를 판단하려는 것이다.

▶ 만약에 '정신, 도덕적 가치, 미적 속성' 등도 물질로 환원될 수 있다면, 물리적 세계가 실재하듯이 그것들도 실재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가) 문단 2 창발주의자들의 심신 이원론 - 수반과 창발

1) 정신과 물질의 관계와 관련하여 창발주의자들은 고통이 뇌 신경 섬유에 수반하는 것처럼 정신적 속성들이 물리적 속성들에 수반한다고 본다. 여기서 수반이란 모든 정신적 속성 각각에 대해 그것의 기저가 되는 물리적 속성인 기저 속성이 반드시 있음을 의미한다.

맥락 읽기 창발주의자'들의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창발주의자들은 정신과 물질의 관계와 관련하여 정신이 물질로서 환원될 수 있다고 보는지 [→ 정신이 '실재'한다고 보는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 '창발주의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에는 '수반'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반'은 모든 정신적 속성에는 그 기저가 되는 물리적 속성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이다.

▶ 가령 '고통'은 정신적 속성에 대응하고 '뇌 신경 섬유의 떨림'은 물리적 속성에 대응한다. '고통'은 반드시 그것과 수반하는 물리적 속성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뇌 신경 섬유의 떨림'이라는 설명이다.

2) 다만 창발주의자들은 물리적 속성에 수반하면서 동시에 그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속성이 나타난 것이라는 점에서, 정신적 속성은 창발된 것이라고 본다.

▶ 창발주의자들의 핵심 주장이다. '고통'이 '뇌 신경 섬유의 떨림'에 수반한다고 해서 '고통'이 '뇌 신경 섬유의 떨림'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즉 정신은 물질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계를 '창발'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3) 창발이란 가령 인체의 각 기관들이 단순히 모였다고 하여 '살아 있는' 인간인 것은 아닌 것처럼,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속성이 물리적 속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 '살아 있는'을 하나의 속성으로 보면, 이는 인체의 각 기관들[→ 물리적 속성]이 모였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살아 있는'이라는 속성은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다.

▶ 하지만 그 '살아 있는'이라는 속성은 분명 인체의 각 기관들에 대한 물리적 속성에 수반하는 것이다.

▶ 마찬가지로 '고통'의 기저가 되는 물리적 속성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정신적 속성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환원 불가능성]. 그래서 이를 '창발'이라 하는 것이다.

4) 그래서 창발주의자들은 정신이 물질과는 다른, 또 다른 실재라고 보는 심신 이원론을 취한다.

▶ 정신이 물질로 환원될 수 없다면 정신 역시 물질로서 실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창발주의자들은 정신이 실재한다고 주장한다. 물리적 세계와는 무관하게 그와 별개로 실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정신이 물질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정신의 실재성을 부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 문단 3 김재권의 심신 이원론 - 기능적 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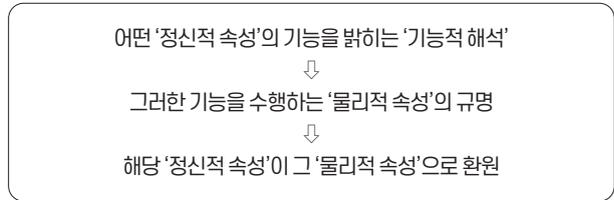
1) 김재권 역시 정신적 속성이 물리적 속성에 수반한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정신적 속성이란 물리적 속성으로부터 독립되어 완전한 자율성을 갖는 것이라는 데카르트적 심신 이원론만이 수반 개념을 부인한다.

맥락 읽기 새로운 관점이 제기되었다. 앞서 등장한 창발주의자들의 입장과 구분하여 이해하자.

▶ '김재권'은 수반 개념을 수용한다는 점에서는 창발주의자들과 공통점을 갖는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데카르트적 심신 이원론'뿐이다[→ 정신적 속성은 그 기저에 물리적 속성을 갖지 않으며, 정신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하지만 김재권은 수반 개념만으로는 정신과 물질의 관계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모든 정신적 속성은 기능적 환원을 통해 물리적 속성으로 완전히 환원됨을 보일 수 있다. 예컨대 '고통'이라는 정신적 속성은 '찔렸을 때 움츠러들거나 신음 등을 일으키는 어떤 속성을 지님'으로 기능적 해석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속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창발주의자들과의 차이점이다. 김재권은 수반 개념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신적 속성이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방법을 가리켜 '기능적 환원'이라고 한다.



3) 그래서 김재권은 심신 일원론인 **물리주의**를 취한다.

▶ 정신이 물질로 환원될 수 있다면 정신 역시 물질로서 실재한다고 볼 수 있다[문단2-2]. 따라서 김재권의 입장은 '심신 일원론'에 해당한다. 두 관점을 대비하여 정리해 보자.

	창발주의자	김재권
수반	○	○
환원	×	○
정신의실재성	○	○

(나) 문단 1 미적 수반론

예술 작품에 대해 감상자들은 '우아하다', '장엄하다'와 같은 **미적 판단**을 내린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미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과 달라서 시각, 청각, 촉각 등 보통의 감각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 그럼에도 **미적 속성의 실재성을 주장하는 일부 미학자들은 '장엄하다'와 같은 미적 속성은 '느린 리듬', '하강하는 멜로디'와 같이 감각할 수 있는 물리적 속성인 비미적 속성에 의존한다**는[수반한다는] **미적 수반론**을 제시한다.

맥락 짚기 ▶ 통합 지문은 (나)를 읽는 시점에서 (가)를 온전히 이해했음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가)를 토대로 하여 (나)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에서 '미적 속성'은 과연 그것을 파악하는 주체[→ 여기서는 '감상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재하는지 의문의 대상이었다(가)의 문단1-). 그에 대한 논의가 (나)에서 '미적 수반론'으로 제기되고 있다.

▶ '미적 수반론'은 모든 '미적 속성'이 '비미적 속성'을 그 기저 속성으로 갖는다는 주장이다(가)의 문단2-1). (가)의 논의에 비추어 보면 '미적 속성'은 정신적 속성에 대응되고, '비미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에 해당한다.

▶ 이들이 '미적 속성의 실재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가)의 '창발주의자들의 입장을 따를 수도 있고, 김재권의 입장을 따를 수도 있다.

• 창발주의자의 입장을 따를 시 :

미적 속성은 비미적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비미적 속성과는 다른, 또 다른 실재에 해당한다(가)의 문단2-4).

• 김재권의 입장을 따를 시 :

미적 속성은 비미적 속성으로 환원되므로, 미적 속성은 비미적 속성과 동일한 것으로서 실재한다(가)의 문단3-2).

(나) 문단 2 시블리의 미적 수반론 - 취미 능력

1) 미적 수반론자인 **시블리**는 기저 속성이 수반 속성을 발생하게 하는 수반 관계가 비미적 속성과 미적 속성 간에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미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인 비미적 속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비미적 속성의 변화는 미적 속성의 변화를 낳는다.

▶ 문단에서 제기한 미적 수반론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시블리에 따르면 미적 속성이 비미적 속성에 수반하는데……'

2) 다만 실재하는 미적 속성의 지각에는 보통의 감각이 아니라 미적인 것을 취하는 감수성인 **취미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는 **미적 속성이 비미적 속성으로부터 창발된 것**이라고 보았다.

▶ 그렇다고 미적 속성이 비미적 속성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김재

권의 입장이 아니라 창발주의자들의 입장에 가깝다. '취미 능력'이라는 특수한 능력을 가정하는 것도 '미적 속성의 실재성'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3) 그에 따르면 훈련에 의해 미적 감수성을 습득해야 작품의 부분적 요소들[→ 비미적 속성]이 상호 작용을 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속성[→ 미적 속성]도 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결국 미적 속성이 비미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예상대로의 결론으로, (가)의 문단2-3)에 대응되는 설명이다. 부분들에 대응하는 비미적 속성만으로는 전체에 대응하는 미적 속성을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적 속성은 비미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주목 ▶ 요컨대 시블리는 '취미 능력[→ 미적 감수성]을 제한함으로써 미적 속성이 실재함을 주장한다. 비미적 속성만으로는 미적 속성을 경험할 수 없지만, '취미 능력'이 있다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문단 3 미적 반실재론

1) 그런데 취미 능력을 갖춘 사람들 간에도 미적 속성의 지각에 불일치가 나타나곤 한다. 가령 원색으로만 구성된 그림을 보고 어떤 이는 '경이롭다'라는 판단을, 다른 이는 '허무하다'라는 판단을 한다. 이러한 불일치 현상은 **미적 반실재론자들**이 미적 속성이란 물리적 속성에 수반하는 실재가 아니라 **감상자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근거가 된다.

▶ '미적 수반론자에 대한 비판이다. 취미 능력을 갖춰 미적 속성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미적 속성이 대상을 파악하는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재하는 것이라면] 모두가 '동일한' 미적 속성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이러한 '미적 경험의 불일치 현상'은 결과적으로 미적 속성이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2) 작품에 대한 미적 판단은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설령 미적 판단이 서로 유사하더라도 이는 유사한 미적 관습을 형성한 사람들이 유사하게 반응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 '미적 속성이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설령 여러 감상자들의 미적 판단이 유사하더라도 그 유사함은 작품에 실재하는 미적 속성 때문이 아니다. 미적 관습에 의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나) 문단 4 레빈슨의 미적 수반론 - 맥락적 속성

1) 미학자 **레빈슨**은 미적 반실재론자들의 입장이 미적 판단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미적 수반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여 대응하였다. 그는 **미적 속성이 감상자의 가치 판단과 무관하게**[→ 미적 속성은 감상자와 독립적으로 실재한다.] 물리적 속성에 의존하지만, 그 발현에는 **맥락적 속성**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맥락 짚기 ▶ '레빈슨'이라는 새로운 학자의 입장이 제기되었다. 문단3)의 미적 반실재론에 대응하려는 것임을 고려했을 때 미적 속성의 실재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 '레빈슨'은 미적 수반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맥락적 속성'을 제안한다. 미적 속성은 비미적 속성들뿐 아니라 '맥락적 속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이다.

2) 맥락적 속성이란 예술사적 맥락이나 장르, 작가 정보 등을 뜻한다. 레빈슨에 따르면 **감상자는 맥락적 속성을 공유해야 작품에 실재하는 미적 속성을 온전히 지각할 수 있다.** 입체파가 탄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18세기에 피카소가 그린 것과 같은 작품이 발표되었다면 그에 대한 미적 속성은 달리 판단되었을 것이다.

▶ 감상자들에 따라 미적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미적 속성이 실재하지 않아서

가 아니다. 모두가 똑같은 '비미적 속성'을 감각하더라도 '맥락적 속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주목 ▲ 모두가 동일한 수준의 '맥락적 속성'을 공유한다면 동일한 미적 판단이 가능하다. 이는 미적 속성이 분명히 실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레빈슨 역시 미적 속성에는 비미적 속성과는 다른 독특한 경험적 내용이 있다는 점 [→ '맥락적 속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환원 불가능성을 주장한다.

▶ 시블리와 마찬가지로 레빈슨은 미적 속성이 비미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미적 속성을 '창발'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나) 문단 5 미적 수반론에 대한 비판

1) 이러한 미적 수반론은 물리주의를 비롯한 여러 입장들로부터 미적 속성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되지도 않은 채 실재하면서 어떻게 인과적 힘을 미치는지에 대해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 (가)의 창발주의자들이 정신적 속성에 대해 내린 결론과 동일하게, '미적 수반론'에 따르면 미적 속성은 분명히 비미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미적 속성은 물리적 세계의 틀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여전히 미적 속성이 실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 김재권의 입장에 따라 미적 속성이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면 미적 속성은 물질로서 실재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미적 속성은 창발된 것이므로 비환원적이다.'라는 순환적 주장일 뿐이라는 것이다.

▶ 날카로운 지적이다. 애초에 창발된 것이라면 그것은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 명제를 어떻게 '미적 속성은 그럼에도 실재한다'는 주장으로까지 이어 갈 수 있는지는 비판이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레빈슨 : 비미적 속성에는 색, 형태 등의 구조적 속성뿐 아니라 그것이 3.333센티미터임, 특정한 분자 구조를 이룸 등과 같이 물리적 속성이지만 인간이 직접 지각하지 못하는 하부 구조적 속성도 포함됩니다.

▶ '레빈슨'의 입장에서 '하부 구조적 속성'을 새롭게 제안하고 있다. 다만 이는 맥락적 속성처럼 비미적 속성과는 별개인 것이 아니라, 비미적 속성의 하위 개념이다.

▶ 비미적 속성에 속하는 '구조적 속성'은 지각 가능한 물리적인 것인 반면 '하부 구조적 속성'은 지각 가능하지 않은 물리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미적으로 상이하지만 ……

▶ 감상자에 따라 미적 판단이 상이하지만 ……

주목 ▲ 이 시점에서 '미적 반실재론자'들의 비판을 떠올려야 한다. 즉 레빈슨은 맥락적 속성에 더해 '하부 구조적 속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감상자에 따라 미적 판단이 상이해지기 때문에 '미적 속성은 실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3) …… 구조적으로 상이하지 않은 두 대상은 반드시 하부 구조적으로 상이하거나 맥락적으로 상이한 것이지요. 미적 속성은 구조적 속성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부 구조적 속성이나 맥락적 속성에도 의존하는 셈입니다.

▶ 동일한 작품을 바라볼 때 미적 판단이 감상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감상

자들이 공유하는 '맥락적 속성'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작품으로 지각되더라도, 그에 대한 감상자들의 미적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작품의 '하부 구조적 속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4) 김재권 :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이론을 검토해 본 결과, 미적 속성이 실재하는 것이라면, [가]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재권'은 물리주의에 해당하는 입장으로 환원 가능성을 인정한다. 그가 '미적 속성의 실재성'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미적 속성이 비미적 속성으로 환원되기 때문일 것이다.

∴ ⑥번 선지가 적절하다. 환원이 불가능하다면서 여전히 미적 속성이 실재한다고 주장하는 레빈슨의 입장을 김재권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무언가를 동원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레빈슨'의 결론이라면, 이를 통해서는 미적 속성이 실재한다는 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강

헌법과 법률에 따른 간접 차별

지문 평가

정보들이 어떻게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인 지문이다. 문단과 문단2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차별'과 '간접 차별'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문단3과 문단4에서는 '해당 법률이 간접 차별에 해당하여 위헌으로 판단하는 경우'와 '해당 법적 조치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의하여 차별되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Keyword

사회 - 법학 - 간접 차별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재판소, 간접 차별, 제대군인지원법의 조항, 헌법 재판소의 1999년 판결,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항

문단 1 평등권의 의미와 적용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등권**을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있다.

➡ 기본권으로서 주어지는 '평등권'의 내용이다. 첫 문단에서 제시되는 개념은 지문 전체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가능성이 높으니, 이를 분명히 의식한 상태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 나가자.

2) **헌법 재판소**는 여기서의 평등권이란 일체의 차등적 대우를 배척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받을 권리라고 본다. 이에 따르면 참전 유공자 중 전상을 입은 이와 그렇지 않은 이는 희생의 정도나 복지가 요청되는 정도가 다르므로, 법률로 양자에게 동일한 보상을 하는 것은 차별일 수 있다.

➡ '헌법 재판소'의 입장에서 서술된 '평등권의 진정한 의미'다. 즉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구절은 모든 것을 같게 대우해야 한다[→ 일체의 차등적 대우를 배척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뜻이다.

➡ 주어진 예시를 활용해서 이해하자. 평등권이 의미하는 바가 '일체의 차등적 대우를 배척하는 것'에 있다면 모든 참전 유공자에게는 같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평등권'의 진정한 의미에 따르면 '전상을 입은 이와 그렇지 않은 이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 동일한 보상을 하면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이 되어 오히려 차별이 된다].

3) 헌법 재판소는 이 경우처럼 어떤 두 대상이 본질적으로 같은지에 대해 판단해야만 할 때에는, 그 판단이 **해당 법률 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고 본다. 참전 유공자의 공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목적이려면 전상 유무로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 헌법 재판소는 평등권에 비추어 해당 법률이 차별인지, 차별이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 즉 해당 법률이 본질적으로 같은 대상을 같게 대우하는지[→ 다른 대상을 다르게 대우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해당 법률 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다.

➡ 가령 '참전 유공자 중에서 전상을 입은 이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법률'의 경우라면, 애초에 '적절한 보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게 된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상을 입은 이와 그렇지 않은 이를 본질적으로 다른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단 2 간접 차별의 위헌 사례

1) 그런데 어떤 법률 조항이나 법적 조치가 **중립적인 조건**에 따라 적용 대상을 정하여 법적 효과를 부여했음에도, **결과적으로** 보아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특정한 속성을 갖는 사람들에게 **차등적 효과**가 유발되는 **'간접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 중립적인 조건에 따라 법적 효과를 부여한 것은 법률의 목적과 의미로 보았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대상을 같게, 다른 대상을 다르게 대우했다는 뜻이다. 즉 법률의 목적과 의미 측면으로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차등적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차별이 바로 '간접 차별'이다.

2) 공무원 시험에서 제대 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의 조항**이 위헌이라고 본 **헌법 재판소의 1999년 판결**은 간접 차별을 차별로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 **맥락 읽기** ▶ 주어진 예시를 앞서 언급된 '간접 차별'의 의미에 적용하면서 읽어 나가자.

➡ 제대 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대군인지원법의 조항'은 그 의미와 목적을 보았을 때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대 군인과 제대 군인이 아닌 자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해도 된다는 해석이다.]. 즉 제대 군인과 제대 군인이 아닌 자 사이의 차등적 효과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이 판결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제대 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는 **정당한 목적**을 두었으나, **성별에 의한 차별**을 가져왔다. 여성 중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 군인일 수 있음에 반해 남성 대부분이 제대 군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원래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성별'에서 특정 속성을 갖는 사람들에게 [→ 남성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한 차등적 효과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제대 군인이 남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헌법 재판소는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위헌] 판단한 것이다.

문단1의 '차별'	문단2의 '간접 차별'
법률 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차별	법률 조항의 의미와 목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차별

▶▶▶ **주목** ▶ '제대군인지원법의 조항'은 분명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다른 대상을 다르게 대우한다. 법률 조항의 목적 자체는 정당하여 차별 의도가 없는 것이다.

4) 이렇듯 간접 차별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법률 조항이나 법적 조치의 적용 대상에 따라 정해졌던 **비교 대상**이 달라진다. 제대 군인과 제대 군인이 아닌 자 간의 비교가 아니라 남·여 간의 비교 문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 더 이상 '제대 군인과 제대 군인이 아닌 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본질적으로 같은 대상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 바로 '간접 차별'의 상황이다.

문단 3 헌법에 따른 간접 차별 인정

1) 물론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차등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항상 간접 차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모든 '간접 차별'이 '위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2) 또한 헌법 재판소의 판례들로 보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여겨지거나 실질적인 제한으로 보기 힘든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다.

▶ 그 외에도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위헌'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
- 그 목적이 정당하여 차별 의도가 없는 경우
- 실질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주목 ▲ 이때 다음의 의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야 한다. 문단2의 사례는 분명 법률 조항의 목적을 보았을 때 정당하여 차별 의도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 사례도 기본권 침해가 아니어야 할 텐데, 왜 그렇지 않고 '위헌'으로 판단되었을까?

3) 다만 헌법 제11조 제1항처럼 헌법에서 특별히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을 제시한 경우나 차등적 효과로 인해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 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차별 금지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단2의 사례는 '성별'에 관한 문제로 전환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여 '엄격한 심사 척도'가 적용되어야 했던 것이고……

4) 제대 군인 가산점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 역시 성별에 의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 헌법에 의해 보장된 공무 담임권(= 모든 국민이 선거직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 척도가 적용되었다.

▶ 그 결과 헌법 재판소는 위헌으로 판결했다. 여기에서 '엄격한 심사 척도'가 요구되는 경우라면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문단 4 개별 법률 조항에 따른 간접 차별 인정

1) 한편 차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개별 법률 조항에 따라 관련 법적 조치가 차별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때에는, 그 법적 조치가 차등적 효과를 유발함은 물론이고 그 조항의 내용으로 보아 법적 조치가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로 인정된다.

맥락 짚기 ▶ 앞선 논의는 특정 법률 조항이 '평등권'에 비추어 위헌으로 판단되는지를 살피기 위함이었는데, 문단4에서는 초점을 전환하여 '어떤 법률 조항에 차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때[→ 맥락을 고려했을 때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어떤 법적 조치가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상황을 설명하고자 한다.

▶ 어떤 법적 조치가 특정 법률 조항에 비추어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법적 조치에 의해 차등적 효과가 발생하고, 해당 법률 조항의 내용을 보았을 때 해당 법적 조치에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 다만 '관련 법률 조항의 내용을 보았을 때 차별하려는 의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는 아직 의문이다.

2) 예컨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은 차별을 정의하면서 "사업주가 채용 조건이나 근로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한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주어진 예시를 통해 앞선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 가령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

3)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시한 근로 조건은 그것이 차등적 효과를 낼 뿐 아니라, 그것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어서 사업주에게 차별 의도가 있다고 보일 때에, 간접 차별로 인정된다.

▶ 채용 조건이나 근로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 표면적으로는 같은 대상을

같이, 다른 대상을 다르게 대우하더라도 차별 의도가 있다면 간접 차별로 인정된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 지문의 내용을 특정 사례 (가), (나)에 적용하여 판단해야만 하는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다. 각각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차별', '헌법 재판소가 특정 법률 조항의 간접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차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법률 조항에 따라 특정 법적 조치의 간접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중 무엇에 해당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가) 갑은 교원 임용 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는 법률을 두고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종교인을 차별하는 조치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 하였다. 이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시험 관리 인력 및 시행 장소 등의 확보를 위해 정한 것이라는 점과 응시가 사실상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 (가)는 '헌법 재판소가 특정 법률 조항의 간접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교원 임용 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는 법률'은 그 의미와 목적이 '시험 관리 인력 및 시행 장소 등의 확보를 위한 것'에 있다. 즉 차별 의도가 없는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

▶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 대상이 '종교인과 비종교인'으로 전환되어 차등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또한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특별히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종교'를 다루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 척도'가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이다[문단3-3].

▶ 그렇지만 목적이 정당하여 차별 의도가 없다는 점, 실질적으로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문단3-2] 엄격한 심사 척도를 적용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나) 한 사립 학교의 사업주 을은 성별과 무관하게 수학 교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내었다. 다만 해당 공고에는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체력 검증을 이유로 근력 테스트 점수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나)는 '차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법률 조항에 따라 특정 법적 조치의 간접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단4-2)와 마찬가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여 판단하면 된다.

▶ 이때 간접 차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등적 효과'가 발생해야 하고, 더 나아가 해당 법률 조항의 내용을 보았을 때 (나)의 채용 공고에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문단4-1].

∴ ⑥번 선지가 적절하다. 차등적 효과를 낳는 것은 물론이고, '근력 테스트 조건'이 차별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인지를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2형 당뇨병과 인슐린 저항성

지문 평가

제2형 당뇨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왜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지문이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인슐린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반면 제2형 당뇨병이 걸린 사람의 경우에는 왜 인슐린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Keyword

과학 - 생리학 - 인슐린 저항성

혈당, 제2형 당뇨병, 인슐린, 인슐린 저항성, 글리코젠, 지방, 글루카곤, 당 신생, 다이아실글리세롤, 인슐린 수용체, 포도당 수송체 단백질, PKC, 인산화 반응, 글루코카이네이스 효소

문단 ① 제2형 당뇨병

혈중 포도당이 **혈당**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게 유지되는 대사 질환인 당뇨병은 심혈관 계통과 눈, 혹은 말초 신경 등에서의 합병증을 잘 유발한다. 특히 **제2형 당뇨병**은 체장의 베타 세포에서 합성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공복 시에나 음식물 섭취 시에 비교적 적정량이 분비되더라도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인 **인슐린 저항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 ▶ '인슐린'은 베타 세포에서 합성되는 호르몬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더라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 ▶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분비되지만 그 인슐린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질병이다.

참고 ▼ 제1형 당뇨병은 체장의 베타 세포가 파괴되고 없어서 체내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는 질병이다.

문단 ② 인슐린의 기능 및 인슐린 저항성 유발 인자

- 1) 인슐린은 일정량씩 분비되다가 음식물을 섭취하여 **혈당**의 농도가 높아지면 다량 분비된다. 그리고 **혈중 포도당**이 근육 등 말초 조직의 세포로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하여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도록 돕는다.
 - ▶ 음식물을 섭취하면 그 영향으로 혈당의 농도가 상승하게 되고, 그에 대응하여 인슐린의 분비량이 늘어나게 된다[→ 평상시에도 인슐린은 일정하게 분비되고 있다는 점 함께 챙기자].
 - ▶ 인슐린은 혈중 포도당이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과정을 돕는다. 이는 혈중 포도당의 농도를 낮추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즉 음식물을 섭취하여 혈당의 농도가 높아지더라도, 인슐린이 제 기능을 수행하면 다시 혈당의 농도가 낮아진다. 이것이 인슐린의 첫 번째 기능이다.
- 2) 아울러 정상 범위보다 **혈당**의 농도가 높아서 남은 **포도당**이 간이나 근육에서는 **글리코젠** 형태로, 지방 조직에서는 **지방** 형태로 **변환**되어 저장되도록 돕기도 한다.
 - ▶ 인슐린의 두 번째 기능이다. 어떤 경우에 의해서든 혈당의 농도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면 혈중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나 지방 형태로 저장되도록 돕는다[→ 그 결과 혈당의 농도를 낮춘다].
- 3) 공복 시에는 **글루카곤** 등의 호르몬에 의해 간이나 근육에 저장된

어 있던 **글리코젠**이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되거나 젖산 등을 재료로 간에서 **포도당**이 합성되는 **당 신생**을 통해 혈액으로 포도당이 공급되는데, ……

- ▶ 음식물의 섭취가 혈당의 농도를 높인다면 반대로 공복 시에는 혈당의 농도가 낮아질 것이다. 혈중 포도당은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문단2-1].
- ▶ 이때 혈당의 농도가 높을 때 합성된 '글리코젠'은 혈당의 농도가 낮을 때에는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의 농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 또한 아예 새롭게 포도당을 합성하는 '당 신생'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여기까지는 혈당의 농도가 낮을 때에 혈당의 농도를 정상 범위에서 유지하려는 과정이다.

4) …… 음식물 섭취 시에는 늘어난 인슐린이 **글리코젠 분해**나 **당 신생**을 저해하는 기능도 한다.

- ▶ 인슐린의 세 번째 기능이다. 혈당의 농도가 낮은 공복 기간과 달리, 음식물 섭취 시에는 혈당의 농도를 높이는 요인들[→ 글리코젠 분해나 당 신생]이 억제되어야 한다. 그 기능을 인슐린이 수행하는 것이다.
- ▶ 지문에 제시된 인슐린의 세 가지 기능은 모두 혈당의 농도가 정상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능 ① : 혈중 포도당이 말초 조직 세포로 원활히 유입되도록 도움
 기능 ② : 남은 포도당이 글리코젠, 지방 형태로 저장되도록 도움
 기능 ③ : 음식물 섭취 시 글리코젠 분해와 당 신생을 억제함

5) **인슐린 저항성**은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에 비해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들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로, 유전자 결합이나 노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유발되지만 특히 비만 환자에게서 흔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근육이나 간에 중성 지방이 축적될 때에 나타나는 중간 산물인 **다이아실글리세롤(DAG)**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 중 하나라고 보는 가설이 주목받고 있다.

- ▶ 문단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더라도 인슐린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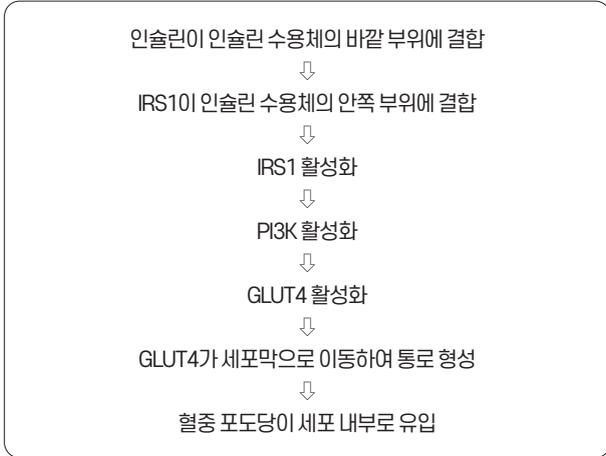
맥락 짚기 ▲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들 중에서도 DAG로 지문의 초점을 좁히고 있다. DAG를 중심으로 인슐린의 기능이 저해되는 원리를 이해하자.

문단 ③ 혈중 포도당 유입 통로의 형성

- 1) 말초 조직의 세포에 접근한 인슐린은 세포의 세포막을 관통해 있는 구조를 띠는 단백질인 **인슐린 수용체**에서 세포막 바깥쪽 부위와 잘 결합한다.
 - ▶ 인슐린의 기능 ①의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대목이다[문단2-1]. 인슐린은 '인슐린 수용체'의 바깥쪽 부위에 결합하면서 세포막 안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2)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이 결합은 인슐린 수용체의 **세포막 안쪽 부위**의 입체 구조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부위에 세포 내 단백질 중의 하나인 **IRS1**이 결합하고, 이렇게 활성화된 IRS1은 또 다른 세포 내 단백질인 **PI3K**를 활성화한다.
 - ▶ 건강한 사람의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제2형 당뇨병에 걸리지 않아서 인슐린의 기능 ①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상황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 ▶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의 바깥쪽 부위'에 결합하면 그 영향으로 '인슐린 수용체의 안쪽 부위'의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그러면 IRS1이 활성화되고, 이어서 PI3K까지 연쇄적으로 활성화된다.
- 3) 혈중 포도당이 세포 내부로 유입하려면 세포 내에 있던 **포도당 수송체 단백질(GLUT4)**이 활성화된 후 세포막을 관통하여 세포 안팎

을 연결하는 통로를 형성해야 하는데, 활성화된 PI3K는 GLUT4가 이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GLUT4를 활성화하여 세포막 쪽으로 이동시킨다.

➡ 이어서 PI3K에 의해 GLUT4가 활성화되고, GLUT4는 세포막 쪽으로 이동하여 '혈중 포도당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형성한다. 인슐린의 기능 ①의 세부 과정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자.



문단 4 DAG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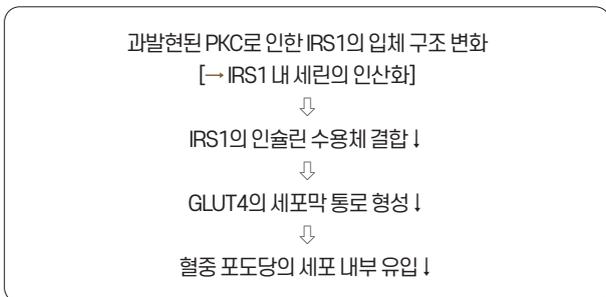
1)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세포 내부에 다량으로 존재하는 DAG가 PKC의 과발현을 유발할 때에는 방해받는다. PKC는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세린에 인산기가 결합되는 **인산화 반응**을 통해 세린이 포함된 해당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효소이다. 본래 PKC는 IRS1이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하는 부위에 세린을 지님에도 그 활성화에 관여하지 못한다.

맥락 짚기 ▶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DAG가 어떻게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으로 작동하는지를 설명한다[문단2-5].

➡ DAG로 PKC가 과다하게 발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IRS1은 세린을 지녔음에도 PKC에 의한 인산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지만……

2) 다만 과발현된 PKC는 일부 IRS1에서 세린의 인산화를 통해 그 입체 구조만 변화시켜서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한다. 결국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하더라도 세포막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활성화된 GLUT4들이 충분치 못한 상태가 되며, 이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을 점차 강화한다.

➡ PKC가 과발현되면 IRS1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활성화를 억제한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연쇄 과정들도 제대로 일어날 수 없어서 혈중 포도당이 세포 내부로 원활히 유입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결국 인슐린의 기능이 억제되는 셈이다.



주목 ▲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됨에도 인슐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것이다.

문단 5 인슐린 작용 저해

1) 한편 인슐린이 간에서 글리코젠 분해나 당 신생을 저해하는 작용은 **글루코카이네이스 효소**에 의해 조절된다. 그런데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글루코카이네이스 효소의 활성도가 정상치보다 낮아서 해당 인슐린의 작용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못한다.

➡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기능 ①뿐만 아니라 기능 ③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2) 또한 제2형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면 대체로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는 초기에는 인슐린의 작용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건강한 사람에 비해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인슐린은 지방 세포로의 지방 축적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여 **비만을 유도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더 강화**하기도 한다.

➡ 제2형 당뇨병의 초기에는 혈중 포도당이 세포 내부로 원활히 유입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인슐린이 정상보다 과하게 분비되기도 한다. 어떻게든 GLUT4가 충분히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다만 제2형 당뇨병에 의해 인슐린의 기능 ②가 억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인슐린의 과다 분비는 지방 축적을 촉진시킨다. 이는 다시 DAG의 축적으로 이어져[문단2-5] 인슐린 저항성이 점차 심화될 것이다.

이강

「사제곡」

- 박인로 -

수록 지문 평가

이 작품은 작가인 박인로가 경기도 사제(莎堤)에서 은거하고 있던 한음 이덕형을 찾아가 함께 지내던 중, 자신의 소회를 시가로 표현해 달라는 이덕형의 청을 받고 지은 은일 가사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는 이덕형의 처자와 심사가 담겨 있고, 화자는 작가인 박인로가 아닌 이덕형이라고 봐야 한다. 이덕형은 선조 때부터 광해군 초에 걸쳐 영의정으로서 있으면서 전란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를 바로잡고자 오랫동안 애써 왔으나, 광해군 초에 정권을 장악한 대북파의 정책에 반대하다가 관직을 삭탈당한 후 낙향하여 사제에서 지내고 있었다.

높고 병이 들어 해골을 빌리실새(= 벼슬에서 물러나려는 청을 임금이 허락하시니)

▶ 관직에 있던 화자(→ 이덕형)가 높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청하여 임금의 허락을 얻었다는 뜻이다. 광해군 대의 정치적 혼란기에 관직에서 쫓겨났다는 이덕형의 전기적 사실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실제와는 달리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 '해골을 빌리실새'는 '갈해(乞骸, 해골을 구걸함)'라는 말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갈해'는 본래 초나라 왕 항우의 재상이었던 범증이 한나라 왕 유방의 인간책으로 인해 항우의 신임을 잃은 후에, 벼슬에서 물러나고 항우로 돌아가겠다고 청할 때 사용했던 말이다. 지문에 나오는 '해골을 빌리실새'는 '해골을 빌려 달라는 청(→ 벼슬에서 물러나겠다는 청)을 임금이 받아들여 나의 해골을 빌려주시니'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임금이 물러나려는 신하에게 해골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 즉 신하가 벼슬에서 물러나도 그의 몸은 여전히 임금의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한수(漢水, 한강) 동쪽 땅으로 물 찾고 산 찾아

용진강 지나 올라 사제(莎堤) 안에 돌아드니

▶ 한강 동쪽으로 산과 물을 따라가다가 사제 땅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사제는 현재의 행정 구역으로는 경기도 남양주에 속한다.

제일강산(第一江山)이 임자 없이 펼쳐져 있네

▶ 경치가 빼어난데 주인이 없으니, 이곳에 정착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것이다.

참고 ▼ 원문은 '제일강산이 임치 업시 보려누다'인데, '보려누다'는 '벌어 있네', 즉 '펼쳐져 있네'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버려져 있네'로 해석하기도 한다.

평생 몽상(夢想)이 오라 하여 그러한지

→ 평생의 염원이 [나를 이곳으로] 오라 한(= 부른) 것이기에 그러한지

물빛과 산색(山色)이 옛 얼굴을 다시 본 듯

무정(無情)한 산수(山水)도 유정(有情)하게 보이도다

▶ 처음 와 본 곳이지만 이곳(→ 사제)의 산과 물이 예전에 보았던 얼굴을 다시 만난 듯이 반갑고, 또 감정을 가질 리 없는 산수가 화자 자신을 다정하게 반기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화자는, 이런 느낌의 이유가 어쩌면 자신이 평생 염원하던 일이 바로 이곳에 은거하는 것이기 때문[→ 평생 염원이 화자를 이곳으로 불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물가 모래밭의 저녁놀 비껴 띠고

삼삼오오로 섞여 노는 저 백구(白鷗, 갈매기)야

너에게 말 묻자 놀라지 말아스라

이 명구승지(名區勝地)를 어디라 들었느냐

▶ 화자가 '백구'에게 묻는 말이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느냐는 것이다.

푸른 물결 넘실대니 위수(= 주나라의 기틀을 세운 정승 강태공이 벼슬길에

오르기 전에 은거하던 강의 이름) 이천(= 송나라 때 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유학자 정이가 은거한 강의 이름) 아닌가요

산봉우리 첩첩하니 부춘(= 자신의 친구인 후한의 광무제가 높은 관직을 주겠다고 하자 그 제안을 거절한 엄광이 은거한 산의 이름) 기산(= 요임금의 왕위 선양 제안을 거절한 하유가 은거한 산의 이름) 아닌가요

숲 깊어 산길 어두우니 회옹(= 성리학을 집대성한 송나라 유학자 주희의 호) 운곡(= 주희가 만년에 은거한 골짜기) 아닌가요

샘물 달고 땅 비옥하니 이원 반곡(= 당나라 시인 한유의 벗인 이원이 은거한 골짜기) 아닌가요

▶ '푸른 물결 넘실대니~이원 반곡 아닌가요'는 '백구'가 화자에게 하는 대답이다. '백구'의 대답 속에서 사제는 정치적·학문적 역량이나 덕망으로 인해 추앙받는 옛 인물들의 은거지와 견주어지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사제의 자연이 빼어나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이덕형의 역량과 덕망을 예찬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원 인망(世遠人亡, 태평하던 시대에서 멀어져 성인(聖人)이 죽고 없음)하여 성인의 옛 종적 아득히 그쳤으니

참고 ▼ 해당 구절은 목판본에는 없고, 필사된 고사본(古寫本, 손으로 베껴 써 옛날부터 전하여 오는 책)에만 들어 있다.

배회하며 생각하되 어디인 줄 내 몰라라

▶ '세원 인망하여~어디인 줄 내 몰라라'는 화자의 독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초와 난초는 맑은 향 가득하여 원근(遠近)에 이어 있고

남쪽 개울 동쪽 시내에 낙화(落花) 가득 잠겼거늘

▶ 사제의 신비롭고 탈속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가시덤불 헤쳐 들어 초옥(草屋) 몇 간 지어 두고

학발(鶴髮, 학처럼 하얗게 센 머리 또는 그런 머리를 한 사람)을 피시고 종효(終孝, 부모의 임종 때까지 효도를 다함)를 하려 여겨

이곳에 거처하니 이 강산의 임자로다

삼공불환차강산(三公不換此江山, 송나라 시인 대북고의 '조대(釣臺)에 나오는 시구로서, 어떤 높은 벼슬과도 이 강산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을 오늘에야 알았구나

▶ 예전부터 알던 시구인데, 그 참된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다는 말이다. 사제의 산수에 묻혀 지내는 삶의 만족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말없이 쉽게도 받았구나

항산(恒産,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산이나 생업)도 보려 하니 한 일 없이 다 있구나

▶ '항산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챙기려 했더니, 자신이 새로이 한 일 없이도 이미 '항산'이 다 있더라는 뜻이다. 여기서 '항산'은 사전적 의미와 달리 쓰인 말이니, 그 함축적 의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자.

참고 ▼ '나는 말없이~한 일 없이 다 있구나'는 목판본에는 없고, 필사된 고사본에만 들어 있는 부분이다.

어지러운 갈매기와 수없는 사슴을

내 혼자 거느려 가축으로 삼았거든

▶ 물가의 '갈매기'와 산의 '사슴'들을 실제로 잡아다가 자신의 '가축'으로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다. 마치 '가축'을 거느리듯이, 늘 주변에서 그것들을 보며 자연을 즐긴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값없는 청풍명월(淸風明月)은 절로 내 것 되었으니

▶ '청풍명월'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도 앞의 '가축'처럼 이해하면 된다. 실제로 자신의 소유가 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소유물이나 다름없이 언제나 실컷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 앞에서 '항산'이 이미 다 있다고 한 것은, '갈매기'와 '사슴'과 '청풍명월'이 이미 모두 갖추어져 있어 자신의 재산이 되었다는 뜻이다. 즉, 진짜 재산이 있

다는 뜻의 시구가 아니라 자연에서 얻는 만족감을 나타내기 위한 시구인 것이다.

남과 다른 부귀(富貴)를 이 한 몸에 갖췄구나

▶ '남'이 가진 부귀가 재물을 의미한다면, 화자가 가진 '남과 다른 부귀'는 사제의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의미한다.

이 부귀 가지고 저 부귀 부러워할쏘냐

▶ '이 부귀'는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저 부귀'는 세속에서 누리는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러운 줄 모르거든 사귄 줄 알겠는가

▶ 세속의 풍족한 삶이 부럽지 않으니, 굳이 세속의 사람을 사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홍진(紅塵)도 멀어 가니 세사(世事)를 등볼쏘냐

▶ 세속에 대한 거리감을 나타내면서, 세속의 일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음을 말하고 있다.



[22~27] 현대소설

(가) 「서울 1964년 겨울」

- 김승옥 -

수록 지문 평가

선술집에서 '나'와 '안'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지문의 전부이지만, 대화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그리 기록하지만은 않다.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느끼는지 그 관계에 집중하며 읽어 보자.

[앞부분의 줄거리]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구청에서 일하는 '나'는 어느 날 밤 선술집에서 대학원생 '안'을 만난다. '안'과 꿈틀거림을 화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안'이 데모를 꿈틀거림의 예로 들자 '나'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고, 둘의 대화는 끊어진다.

나는 이젠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다소 서글픈 기분[→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아 대화가 끊어진 상황에서 느끼는 서글픔이다.]으로 생각했다. 결국 그렇고 그렇다.[→ 술집에서의 만남이란, 또는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란 이렇듯 흐지부지 끝나기 마련이라는 의미다.] 또 한 번 확인된 것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자, 그럼 다음에 또……'라고 말할까 '재미있었습니다'라고 말할까, 궁리하고 있는데 술잔을 비운 안이 갑자기 한 손으로 내 한쪽 손을 살그머니 잡으면서 말했다.[→ '안'은 아직 이 만남에 미련이 남은 모양이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짜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속내를 온전히 털어놓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적절하다.]

“아니요.” 나는 좀 귀찮은 생각이 들었다. “안 형은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한 얘기는 정말이었습니다.”

“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는 붉어진 눈두덩을 안경 속에서 두어 번 꿈벅거리고 나서 말했다. “난 우리 또래의 친구를 새로 알게 되면 꼭 꿈틀거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얘기는 오 분도 안 돼서 끝나 버립니다.”[→ '안'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며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다.]

▶ 수록 지문 이전 부분에서 '나'와 '안'은 '꿈틀거림'을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작품 속에서 이 '꿈틀거림'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제시되지는 않지만, 대략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 끌어오르게 하는 것, 또는 그런 느낌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나는 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듯하기도 했고 모를 것 같기도 했다.

“우리 다른 얘기합시다.” 하고 그가 다시 말했다.

나는 심각한 얘기를 좋아하는 이 친구를 골려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음성을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취한 사람의 특권을 맛보고 싶어서 얘기를 시작했다.

▶ 일부터 별 의미가 없는 말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만한 얘기, 그래서 골머리를 싸매야 할 만한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평화시장 앞에 줄지어 선 가로등들 중에서 동쪽으로부터 여덟 번째 등은 불이 켜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좀 어리둥절해하는 것을

보자[→ '나'가 별 맥락도 내용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안'의 입장에서는 어리둥절 할 만도 하다.] 더욱 신이 나서 얘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화신백화점 육 층의 창들 중에서는 그중 세 개에서만 불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내가 어리둥절해질 사태가 벌어졌다. 안의 얼굴에 놀라운 기쁨이 빛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의 의도와는 달리 '안'은 이 얘기를 듣고 기쁜 반응을 보인다. 그러고는 다시 둘의 소통이 재개된다.]

그가 빠른 말씨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서대문 버스 정거장에는 사람이 서른두 명 있는데 그중 여자가 열 일곱 명이었고, 어린애는 다섯 명, 젊은이는 스물한 명, 노인이 여섯 명입니다.”

(중략)

▶ '중략' 부분에서 '나'와 '안'은 이외에도 골목 쓰레기통의 초콜릿 봉투며, 적십자 병원 정문 앞 호두나무의 부러진 가지며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한다. 그러다가 문득 '나'는 부잣집 아들이고 많은 공부를 한 '안'이 이런 경험을 늘어놓으며 즐거워한다는 데 대해 이상스러운 기분을 느낀다.

“안 형이 부잣집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그리고 대학원생이라는 것도…….” 내가 물었다.

“부동산만 해도 대략 삼천만 원쯤 되면 부자가 아닐까요? 물론 내 아버지의 재산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생이란 건 여기 학생증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는 호주머니를 뒤적거려서 지갑을 꺼냈다.

“학생증까진 필요 없습니다. 실은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요. 안 형 같은 사람이 추운 밤에 싸구려 선술집에 앉아서 나 같은 친구나 간직할 만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스럽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 '나'는 '안'과 자신의 처지의 차이를 의식하고 있다. 자신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몰라도, '안'이 밤거리를 다니며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워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건…… 그건…….” 그는 좀 열띤 음성으로 말했다.

▶ '안'은 약간의 흥분 상태이다. 비슷한 경험을 한 데다가 그로부터 느낀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에 대한 반가움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지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 형이 추운 밤에 밤거리를 쏘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습관은 아닙니다. 나 같은 가난뱅이는 호주머니에 돈이 좀 생겨야 밤거리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글쎄, 밤거리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안'의 물음이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미 기대하는 대답이 있는 질문이다.]

“하숙방에 들어앉아서 벽이나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는 나오니까요.” [→ 할 일 없이 지루한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나'의 대답이다.]

“밤거리에 나오면 뭔가 좀 풍부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 '안'은 다시 질문을 던지는데, 이번에는 질문 안에 이미 내용이 있다. '나'의 대답은 '안'이 원하는 답이 아니며 '안'은 '나'가 밤거리에서 무언가 풍부해지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뭡가요?”

“그 뭡가가, 그러니까 생(生)이라고 해도 좋겠지요. 난 김 형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내 대답은

이렇습니다. 밤이 됩니다. 난 집에서 거리로 나옵니다. 난 모든 것에서 해방된 것을 느낍니다. 아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그렇게 느낀다는 말입니다. 김 형은 그렇게 안 느낍니까?” [→ 질문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좀 더 노골적이 되었다. '너 역시 그렇게 느낄 것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글쎄요.”

“나는 사물의 틈에 끼여서가 아니라 사물을 멀리 두고 바라보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글쎄요, 좀…….”

▶ 이야기가 너무 거창해지는 것 같아 '나'는 발을 뺐다. 자신은 그냥 하는 일인데, 대학원생인 '안'이 거기에 이런저런 의미를 붙이는 것 같아 말을 아끼는 것이다.

“아니,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를테면 낮엔 그저 스쳐 지나가던 모든 것이 밤이 되면 내 시선 앞에서 자기들의 별거벗은 몸을 송두리째 드러내 놓고 찢찢맨단 말입니다.”

▶ 자신과의 차이를 의식하는 '나'의 김새를 눈치채고 '안'이 한 말이다. '너도 이런 기분을 느낄 테니까, 괜히 거부감부터 가지지 말고 잘 생각해 보라……' 정도의 뜻을 담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감

수록 지문 평가

참신한 도회적 감각이 돋보이는 글이다. 표현을 음미하며 읽어 보자. 이 글을 쓰던 당시 이상은 폐병으로 인해 몸이 약화되어 요양차 평안남도 성천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며 읽으면 글쓴이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채 사라다에 놓이는 아스파라거스 잎사귀 같은 또 무슨 화초가 있습니다. 객숙집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기상꽃 — 기생화(妓生花)란 말입니다. 무슨 꽃이 피나 — 진흥 비단 꽃이 핀답니까.

선조(先祖)가 지정하지 아니한 조셋트 치마에 웨스트민스터 권연(卷煙)을 감아 놓은 것 같은 도회(都會)의 기생의 아름다움을 연상하여 봅니다. [→ '기상꽃'이라는 이름에서 도회적인 문물을 두른 기생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다.] 박하보다도 훈훈한 리그레추잉껌 내음새, 두꺼운 장부를 넘기는 듯한 그 입맛 다시는 소리 [→ 도회 기생의 모습에 이어져 오는 감각적 연상이다.] — 그러나 아마 여기 [→ 글쓴이가 요양 중인 성천 지방] 필 기생꽃은 분명히 혜원(蕙園,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 신윤복의 호)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 혹은 우리가 소년 시대에 보던 떨떨이 인력거에 홍일산(紅日傘) 받은 지금은 지난날의 삽화인 기생일 것 같습니다.

▶ 글쓴이는 처음에 '기상꽃'이라는 이름을 들고는 도회 기생의 모습을 연상했다가, 이내 '여기' 필 기생꽃은 '지난날의 삽화인 기생일 것 같다'고 한다. 글쓴이가 '여기, 곧 요양지인 성천 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청동호박이 열렸습니다. 호박 고자리(= 무나 호박 따위의 살을 길게 오리거나 썰어서 말린 것)에 무시루떡 — 그 훌훌 끼치는 구수한 김에 쫓아서 증조할아버지의 시골뜨기 망령(亡靈)들은 정월 초하룻날, 한식(寒食, 명절의 하나로, 이날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풍습이 있음)날 오시는 것입니다. [→ 글쓴이는 '청동호박'을 보고는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들을 떠올리고, 그로부터 다시 제사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오는 조상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그러나 저 국가 백 년의 기반을 생각해 하는 넓적하고도 묵직한 안정감과 침착한 색채는 럭비공을 안고 뛰는 이 제너레슨(= 세대)의 젊은 용사의 굼직한 팔뚝을 기다리는 것도 같습니다. [→ 그런 한편으로, 글쓴이는 '청동호박'의 모습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건강한 젊은이들이 들고 뛰는 럭비공을 연상하기도 한다.]

▶ 글쓴이의 자유로운 사고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한편으로, 시골 풍경을 보며 전근대와 근대에 대한 글쓴이의 인상이 교차되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여주가 익으면 껍질이 벌어지면서 속이 빠져나온답니다. 하나를 따서 실 끝에 매어서 방에다가 걸어 둡니다. 물방울 저 떨어지는 풍염(豐鹽)한 미각 밑에서 연필같이 수척하여 가는 이 몸에 조금씩 조금씩 살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야채도 과실도 아닌 유머러스한 용적(容積) [→ 매달아 놓은 여주]에 향기가 없습니다. 다만 세숫비누에 한 겹씩 한 겹씩 해소(解消)되는 내 도회의 육향(肉香)이 방 안을 배회할 뿐입니다.

(중략)

학교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고 생도들은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간단한 산술(算術)을 놓아 그들의 정칙과 순박을 지혜와 교활로 환산(換算)하고 있습니다. 탄식할 이자산(利子算, 원금, 이율, 기간, 이자 등의 값을 구하는 셈법)이 아니겠습니까. [→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본 글쓴이는, 이를 부정적으로 여긴다. 교육이 시골의 정칙함과 순박함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다.] 족보를 찢어 버린 것과 같은 흰나비 두어 마리가 백목 내음새 나는 화단 위에서 번복(翻覆)이 무상(無常)합니다. (중략) 이 마당에서 오늘 밤에 금융 조합 선전 활동사진회가 열립니다. [→ 영화 감상회가 열리는 모양이다.] 활동사진? 세기의 총아 — 온갖 예술 위에 군림하는 [→ 영화가 당대의 으뜸 예술이라는 의미] '넘버' 제8 예술 [→ 제8 예술이란 건축, 조각, 회화, 음악, 문학 등에 이은 여덟 번째 예술을 말한다. 영화를 가장 최근에 출현한 근대적 예술로 본 것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자.]의 승리. 그 고답적이고도 탕아적인 매력을 무엇에다 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활동사진에 대하여 한낱 동화적인 꿈을 가진 채 있습니다. 그림이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은 참 홍모(紅毛, 붉은 머리털, 서양인의 머리칼을 가리키는 말) 오랑캐의 요술을 배워 가지고 온 것 같으면서도 같지 않은 동포의 부러운 재간입니다.

▶ 영화가 가장 뛰어난 예술이라는 건데, 이곳 성천 사람들이 영화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다. '홍모 오랑캐의 요술' 같은 표현에서, 글쓴이가 성천 사람들을 거의 개화 이전의 전근대인처럼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촌사람들에 대한 도회인의 우월 의식이 제법 엿보이는 대목이다.

활동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맛보는 담백한 허무 — 장주(莊周)의 호담몽(胡蝶夢)이 이러하였을 것입니다. [→ 영화를 통해 그려지는 남들의 일생을 보고 난 뒤 느끼는 허무감을 말하는 것이다.] 나의 동글납작한 머리가 그대로 카메라가 되어 피곤한 따불 렌즈로나마 몇 번이나 이 옥수수 무르익어 가는 초가을의 정경을 촬영하였으며 영사하였던가 [→ 성천의 풍경을 보고 글로 남긴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기의 머리를, 사물이나 풍경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카메라에 빗댄 것이 인상적이다.] — 플래시백(= 영화에서, 과거 회상 장면 등에 쓰이는 기법)으로 흐르는 얽은 애수 — 도회에 남아 있는 몇 고독한 팬에게 보내는 단장(斷腸)의 스틸(= 영화 필름 가운데 골라낸 한 장면의 사진)이 외다.

▶ '플래시백'과 '스틸' 등의 표현을 통해 도시에 대한 그리움이나, 농촌 생활 가운데 문득 느껴지는 슬픔 같은 것들이 농촌의 풍경 사이로 끼여든 것을 말하고 있다. 실제로 이 작품 전문을 보면, 중간중간 자신의 병을 의식하며 죽음을 말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